

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 사업 ‘행복누리여행’ 참여 프로그램 운영약정서

(재)서울문화재단(대표 조선희 이하 “발주기관”이라 칭함)과 코레일관광개발㈜ (대표 방창훈 이하 “계약상대자”라 칭함)은 “발주기관”의 「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 사업 ‘행복누리여행’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“계약상대자”의 참여 프로그램에 대하여 상호 신뢰 하에 아래와 같이 본 약정을 체결한다.

- 아 래 -

제1조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의 목적은 “발주기관”이 문화체육관광부, 한국문화예술위원회, 서울시로부터 위탁 주관하는 「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 사업 ‘행복누리여행’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“계약상대자”의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상호의무 및 권한을 명백히 하는데 있다.

제2조(프로그램 개요)

본 ‘행복누리여행’의 참여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과 같다.

- (1) 프로그램명 : 오대산 월정사 / 안목카페거리 / 대관령 양떼목장 - 당일
 - 주요 여행지 : 강원도
 - 출발지정날짜 : 2016년 1월 22일(금), 24일(일)
 - 여행료 단가(1인 기준) : 一金육만육천원정(W66,000)
 - (2) 프로그램명 : 대관령 눈꽃축제 / 양떼목장 / 의야지 바람마을 치즈만들기 체험 - 당일
 - 주요 여행지 : 강원도
 - 출발지정날짜 : 2016년 1월 15일(금), 30일(토)
 - 여행료 단가(1인 기준) : 一金칠만사천원정(W74,000)
 - (3) 프로그램명 : 겨울낭만 남이섬 / 삐디프랑스 / 오색별빛정원전 - 당일
 - 주요 여행지 : 강원도
 - 출발지정날짜 : 2016년 1월 26일(화), 31일(일)
 - 여행료 단가(1인 기준) : 一金팔만사천원정(W84,000)
- ① 본 프로그램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기간 내 각 프로그램별 최대 2일까지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※ 단, 장애인 운영가능 프로그램은 장애인 대상 ‘특별 회차’ 추가운영이 가능하며 가이드 또는 인솔자 증원운영을 필수로 한다.
- ② 연령별 구분 없이 1인 단가 금액으로 진행되며, 입장료, 교통비, 식비, 가이드비, 여행자보험료 등을 포함한 여행일체의 비용으로 공과금, 부가가치세 금액을 포함한다.

제3조(계약기간 및 여행료)

- ① 본 계약은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2월 29일까지 “발주기관”과 협의한 프로그램 여행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며, 프로그램 종료 후 정산 완료일까지로 한다.
- ② 여행료는 ‘매회 참여자 수 × 1인 단가 금액’으로 여행 종료 후 정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.
※ 참여자 수의 경우, ‘여행출발일 4일 전 명단 수’로 최종 확정한다.
- ③ 참여자 인원은 45인승 버스운행을 고려하여 ‘40명 단위의 인원(40인, 80인, 120인, …)’을 기준으로 하고, 30인 이상의 단체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개인신청자를 선착순으로 선정하여 운영한다.

제4조(과업범위)

- ① 여행일체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기획 전반에 관한 사항
- ② 여행운영과 관련된 사전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(여행자보험 가입 및 참여자 개별연락 공지 등)
※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해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여행출발일 7일 전까지 1차 참여자 명단을 제공하며, 참여자명단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은 “발주기관”에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한다.
- ③ 여행자보험 가입, 가이드 동행필수, 의약품 구비 등 안전사고 대비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이 지정하는 사항 등

제5조(협약사항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신청서,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문화재단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여행운영 전반 책임자를 임명(보고)하여 「2015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더누리 사업 ‘행복누리여행’」 참여 프로그램을 책임 수행토록 해야 한다.
- ③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,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“계약상대자”가 부담한다.

제6조(프로그램 시행)

- ① “계약상대자”는 여행프로그램의 추진을 위하여 사전 “발주기관”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- ② “계약상대자”는 “여행프로그램”을 시행함에 있어 관계법규 및 “발주기관”의 지침 등을 준수 하여야 한다.
- ③ “계약상대자”는 여행프로그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임의로 기업 협찬 등을 받거나 홍보할 수 없다.
- ④ “계약상대자”는 여행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참여자들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⑤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가 사전준비를 위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“발주기관”은 “계약상대자”의 여행프로그램의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⑦ 날씨, 장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행추진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의 협의에 의하여 행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.
- ⑧ “계약상대자”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.
- ⑨ “발주기관”은 본 사업이 TV, 라디오, 신문 등 언론매체에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, 프로그램별 차별 없이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7조(지도감독)

“발주기관”은 이 여행프로그램과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할 수 있으며, 필요 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손해배상)

“계약상대자”는 이 여행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·사고에 대하여 민·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 다만, “계약상대자”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계약해지)

“발주기관”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.

- ① “계약상대자”의 해체 및 기타 운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
- ②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“발주기관”이 인정하였을 경우

제10조(기타)

- ①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약정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.
- ②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“발주기관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.
- ③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이 협의하여 정한다.

본 계약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고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. 1. 7.

- 발주기관 -

- 계약상대자 -

상 호 : (재)서울문화재단
대표이사 : 조 선 희 (인)
주 소 :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

상 호 : 코레일관광개발㈜
대 표 : 방 창 훈 (인)
주 소 :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78, 1층